

의안번호	2217030
의 퇴 인	조승환 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계번호	26F10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 시
미포함하여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11조의2 제2항 신설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미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 재산세율: (현행) 0.1~0.4% → (개정안) 0.05~0.35% - 적용기한: 2026.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1조의2 제2항 신설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도 개요)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신설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주택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및 특별자치시 제외)내 소재 주택
 -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0.1~0.4%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대비 0.05%p 낮은 특례세율 적용

[표 1]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0.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0.02%
3억원 초과	0.4%	0.035%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인 0.4% 적용

□ 동 제도의 적용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제12호)
 -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표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수	인구감소지역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2.27., 일부개정

- 인구감소지역 중 동 제도의 적용이 되는 지역은 총 88개 시·군으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도 가평군은 본 개정안에 따른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자료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